

#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공 고 명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대 상 자

대 상 자		세대주	주 소	발급기간	공고사유
성 명	생년월일	성명			
강○	2006. 4. 8.	강○○	원주시 소초면 북원로	2023. 5. 1.~2024. 4. 30.	폐문부재
김○○	2006. 4. 16.	김○○	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	2023. 5. 1.~2024. 4. 30.	폐문부재

3. 공고기간: 2023. 5. 9. ~ 2023. 5. 24.

#### 4. 발급안내

- 상기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·군 또는 자치구 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신 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.
  - 가)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)
  - 나) 주민등록지 관할 이·통장의 확인
  - 다)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
- 준비해야 할 사진: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(3.5cm×4.5cm).  
다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해야 합니다.  
(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)
-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등이 직접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. 다만,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(문의전화: 033-737-5591)

2023. 5. 8.

소 초 면 장

